

	<b>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규정</b>	규정번호	3-7-32
		제정일자	2024.04.01.
		개정일자	
		개정차수	
		소관부서	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진로·취업 관련 업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
2. 진로·취업 상담 시스템 개발 및 운영
3. 진로·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
4. 취업 매칭 및 채용정보 제공
5. 미취업 졸업생(2년 이내) 및 지역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
6. 기업체 연계를 통한 취업처 발굴 및 취업자 DB 구축
7. 정부 및 지자체 연계하여 청년 고용 정책 홍보
8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

## 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고, 전담 직원을 둔다.

- ② 센터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- ③ 부센터장은 교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한다.
- ④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센터 운영을 위해 직원 및 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외부 상담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.
- ⑥ 상담원은 관련 분야 실무 유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는 대학 내 취업 관련 행정부서의 원활한 협력과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보 칙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.